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432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279,653원과 그 중 6,302,141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20.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298,2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5,298,2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액인 10,279,653원과 그 중 원금인 6,302,141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0.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 B의 책임재산 중 더 적은 금액인 5,298,2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5,298,2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상속인인 망 D은 생전에 처와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막내인 피고 C의 소유로 하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그와 같은 사인증여의사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 C에게 각 상속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 후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던 피고 C는 형제인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인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상속지분을 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의 E 주식회사는 2017. 5. 30.경 피고 B에게 금 500만원을 계약만료일 2020. 7. 27.,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신청서 참조).

그런데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E(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24954), 2020. 7. 2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7,827,283원 및 그 중 금 4,692,416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소외 주식회사 F는 2016. 8. 19.경 피고 B에게 금 700만원을 계약만료일 2018. 12. 17., 정상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대출신청서 참조).

그런데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F는 2018. 11. 13. 소외 G 유한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G(유)는 2019. 5. 15.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0,279,653원 및 그 중 금 6,302,141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7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전술하였듯이 원고는 위 (1)항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는바, 본 사건에서는 피고 B를 상대로 위 (2)항의 채권에 대해서만

양수금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2)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인 금 18,106,936원입니다(= 7,827,283원 + 10,279,653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 B의 아버지는 소의 D이었는데, 위 D은 2018. 9. 30. 사망하였고, 피고 B는 위 D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D의 상속인들 및 피고 B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축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0. 2. 1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8호 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

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고 B의 재산인데, 피고 B는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은 채무자인 피고 B의 형제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I)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B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그런데 위 부동산은 사해행위 이전인 2017. 2. 24. '채권최고액 1,200만원, 근저당권자 H 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후인 2020. 2. 14. '채무자 C '인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2020. 5. 4. 말소되었으며, 2020. 4. 27. '채권최고액 2,600만원, 근저당권자 I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8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 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0. 7. 29.까지의 원리금인 금 18,106,93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소장 기재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D]은 2018. 9.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J]'과 자식들인 '[K]', '[L]', '[M]', '[N]', '[O]', '[B]'(피고, 채무자), '[C]'(피고, 수익자)가 있었습니다(갑 제9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0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갑 제1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B]와 피고 [C]는 형제자매관계이고, 피고 [B]의 상속지분은 '2/17'입니다.

나. 위 [D]은 2018. 9. 30.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0. 2. 12.'경입니다(갑 제1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조).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17 지분은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상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 [C]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채무자인 피고 [B]의 무자력에 대하여

가. 법원행정처의 2020. 12. 14.자 회신에 의하면, 피고 B는 2019. 2. 1. 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0. 2. 12.)를 거쳐 조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었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P의 2020. 12. 16.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위 Q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0. 2. 12.)

- ① R은행에 금 2,233,000원(2018. 10. 31. 연체발생),
 - ② S카드에 금 888,000원(2017. 11. 17. 연체발생), 금 4,973,000원(2017. 11. 17. 연체발생),
 - ③ T카드에 금 2,280,000원(2017. 11. 20. 연체발생),
 - ④ U카드에 금 1,579,000원(2017. 11. 20. 연체발생),
 - ⑤ V에 금 718,000원(2018. 5. 28. 연체발생),
 - ⑥ W에 금 19,206,000원(2018. 6. 24. 연체발생),
 - ⑦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금 1,796,000원(2017. 10. 31. 연체발생),
-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참조 ; 위 채무는 사해행위 이전 채무·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변제된 채무임]

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 ⑧ 원고에게 금 4,692,416원(이 사건 양수금 채권임 ; 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중 '원금 잔액' 참조), 금 6,302,141원(이 사건 양수금 채권임 ; 갑 제7호증 채권계산서 중 '원금 잔액' 참조)

등 합계 44,667,5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원금'만에 대한 것인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적극재산은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 B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관련

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H 조합)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며, 새로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I)이 설정되었는바,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나. I의 2021. 4. 14.자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55,609,890원이고,

H 조합의 2020. 11. 24.자 회신에 의하면, 근저당권자가 H 조합인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2020. 2. 12.) 피담보채무액은 10,574,491원입니다(10,000,000원 + 140,936원 + 146,191원 + 144,679원 + 59,030원 + 83,655원 ; 위 회신 22면상의 2020. 2. 13.경 원금 10,000,000원 및 2019. 8. 24. ~ 2020. 2. 23.경 이자 합계액).

따라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부동산 가액 45,035,399원(55,609,890원 - 10,574,491원) 중 피고 B의 상속지분 상당액 5,298,282원(45,035,399원 × 상속지분 2/17, 소수점이하 절사)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8,106,936원과 위 책임재산 5,298,282원 중 원고는 더 적은 금액인 5,298,282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5. 피고 C의 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C는 '망 D이 생전에 자신에게 상속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대로 망인이 유언을 하였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나. (1)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론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57320 판결).

또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즉, 사해의사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고, 이는 특정한 채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합니다.

(2) 아울러,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외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수익자) 및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07.0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이 사건에서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수익자인 피고 C는 자신의 선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오히려, 피고들이 형제관계인 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던 점(갑 제1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 C가 채무자인 피고 B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지 의문입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장흥군 대 489㎡

2. 전라남도 장흥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3.62㎡ 끝.